

제 220 호

1972. 3. 6.

등록 번호 : 제 39 호

등록년월일 : 1953 년 6월 18일

발행인 :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편집인 : 공보실장 손활수

인쇄 : 세진공사

이 영구보존문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였음.
1972. 3. 6.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시 보

차 례

조 례..... 5

고 시..... 32

규 칙..... 13

사 령..... 26

공 고..... 47

서울특별시

시 보 세 분 목 차

< 조 례 >

○제 682 호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	5
○제 683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	5
○제 684 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6
○제 685 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중 폐지	6
○제 686 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7
○제 687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9
○제 688 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	10
○제 689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	10
○제 690 호	서울특별시시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	10
○제 691 호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10
○제 692 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	11
○제 694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12

< 규 칙 >

○제 1195 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 직제 폐지에 관한 규칙	13
○제 1196 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	13
○제 1197 호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14
○제 1198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14
○제 1199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접수제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	15
○제 1200 호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	19
○제 1201 호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	22
○제 1202 호	서울특별시근로자합숙소직제중 개정규칙	22
○제 1203 호	서울특별시의 구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22
○제 1204 호	서울특별시정원규칙중 개정규칙	24
○제 1205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	25

< 사 령 >

○인 사 발 령	26
----------	----

< 고 시 >

○제 1 호	서울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소로망결정	32
○제 2 호	도시계획소로확정	33
○제 3 호	노선조서	33
○제 4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소로신설	34

○ 제 5 호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일부변경	34
○ 제 6 호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변경	35
○ 제 7 호	도시계획소로결정 (확정)	35
○ 제 9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실시 계획인가	36
○ 제 10 호	도시계획시설 (가로) 일부 변경	36
○ 제 11 호	서울도시계획 일부변경	37
○ 제 12 호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고시	37
○ 제 13 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38
○ 제 14 호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38
○ 제 15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38
○ 제 16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41
○ 제 17 호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취소	42
○ 제 18 호	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위치변경	42
○ 제 19 호	공유수면매립면허	42
○ 제 20 호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일부변경	42
○ 제 21 호	도로계획소로결정고시 (확정)	43
○ 제 22 호	도시계획세부과 지역고시	43
○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43
○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안)	44
○ 제 25 호	1972년도 정기중측검사 실시	44
○ 제 26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 계획인가	45
○ 제 28 호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	47
< 공 고 >		
○ 제 1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회복	47
○ 제 2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48
○ 제 4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허가	48
○ 제 6 호	도시계획공원변경 (폐지)	49
○ 제 7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결정	49
○ 제 8 호	도시계획 공원일부변경	50
○ 제 16 호	환지에 정지 변경지정	50
○ 제 17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50

○ 제 18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51
○ 제 19 호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송달	52
○ 제 20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53
○ 제 21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53
○ 제 22 호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공람공고	54
○ 제 26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변경허가	54
○ 제 27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변경허가	55
○ 제 31 호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전달	55
○ 제 33 호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가사업 인가 신청기간의 지정공고	56
○ 제 35 호	하천공작물설치허가 효력회복	57
○ 제 40 호	수도공채원리금 상환공고	57
○ 제 43 호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지적결정	57
○ 제 46 호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실시 공고	58
○ 제 47 호	도시계획미관지구 및 공지지구결정	58
○ 제 48 호	서울특별시장의 직인개각공고	61
○ 제 51 호	직인개각공고	61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제 682 호 제정 1971. 12. 29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

제 1 조 (목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중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행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 (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행위중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지방세법시행령 제 103조, 제 104조, 제 105조 제 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흥 음식장소

②극장, 도살장, 화장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

③오물청소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오물수집장소,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 각장, 분뇨종말처리장

④공중목욕탕중 휴게실 및 터키탐

⑤폐수처리장 및 화계장

⑥전염병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 전염병 요양소 및 진료소

⑦노점, 행상 및 이와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로써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행위

제 3 조 (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②위원장은 교육감이되고 위원은 교육위원 1인과 학무국장, 관리국장, 경찰국장, 보건사회국장 및 건설국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 (감사 및 서기) ①정화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감사 및 서기는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감사를 보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1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683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 2 호 「급수사용료요금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의 제 29 조의 급수사용료는 1972년 1월정수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제 2 호

급 수 사 용 료 요 율 표

구 분 용 도 별		1 전 1 개 월 기본요금		초 과 사 용 료		비 고		
		기본수량 (m ³)	기본요금 (원)	사용량구분 (m ³)	m ³ 당 단가 (원)			
가 사 용		10	150	11 ~ 20	15			
				21 ~ 30	20			
				31 ~ 40	30			
				41 m ³ 이상	40			
영 업 용	1 종	30	1,350	31 ~ 200	70			
				201 ~ 1,000	90			
				1,001 m ³ 이상	120			
2 종		30	900	1 m ³	35			
공 업 용		200	6,000	"	35			
목 욕 탕	갑 종	600	48,000	601 ~ 1,000	100			
							1,001 ~ 3,000	160
							3,001 이상	200
을 종		600	12,000	1 m ³	25			
공 설 공 용		100	1,000	1 m ³	10			
특 수 용		사용수량	1 m ³ 당 20 원					
사 설 소 화 전		원 100 원						
기 타		1. 사 설 소 화 전 의 연 습 사 용 료 는 특 수 용 요 율 에 의 한 다. 2. 일 차 급 수 사 용 료 는 사 용 수 량 입 방 미 터 당 70 원 으 로 한 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4 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5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5 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폐지에 관한 조례 1970. 6. 18 서울특별시조례제 621 호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사업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6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 1호 시민회관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오 전	오 후	야 간	비 고
		07 : 00 11 : 30	12 : 30 17 : 00	18 : 00 22 : 30	
대 강 당	평 일	24,480	33,600	78,000	유료공연에 한해서 오후 야간을 2일이상 계속 사용시에는 기본대관료의 10%를 감액함.
	토, 일, 축 일	28,800	43,200	96,000	
소 강 당	평 일	3,600	6,600	6,840	
	토, 일, 축 일	4,200	8,400	8,640	
별 관	평 일	2,400	3,840	4,080	
	토, 일, 축 일	2,640	4,800	5,040	
신 관	평 일	4,800	7,200	7,200	
	토, 일, 축 일	5,400	9,600	9,600	

다만, 대강당사용료징수조례에 있어서 일반공연물(쇼)과 외화는 기준입장료를 300원 방화 200원 특수공연물(음악, 무용)은 300원으로 하여 일반공연물과 영화는 기준입장료를 초과하는 100원까지 특수공연물은 매 300원까지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2. 예식장사용료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소 강 당	건	4,500	
별 관	건	3,000	
신 관	건	7,500	

3. 기 타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영 화 촬 영	1 회 3 시간	12,000	
T.V중계방송	1 회	1,900	
탐신현수막 계 시	1회3일내	3,000	

별표제 2호 부속설비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별	품명	단위	사용료	비고
악기	스탄위피아노 (대형)	대	7,200	조율비별도
	" (중형)	"	3,600	
	피아노 (소형)	"	600	
음향장치	마이크	"	600	
	무선마이크	"	1,200	
	텐테블	"	600	
	테이프레코드	"	1,200	
조명장치	종합조명	일	28,800	종합조명은 쇼, 무용, 연극, 오페라, 국극 및 이에 준하는 조명이며, 중형피아노와 마이크를 포함한다. 다만, 25 KW 미만 종합조명은 2,000 원으로 한다. 20 KW 미만 조명은 8,000 원으로 한다.
	핀스포트라이트 3 KW	대	1,200	
	스포트라이트 2 KW	"	720	
	포타라이트	회로	1,800	
	스트라이트	K	360	
	프로젝타	대	1,800	
	르트리프타이트	과이	120	
	아크	대	1,200	
전기 사용료	KW	(관허요금)		
무대장치	연의용탁자	식	} 2,400	관외 대여시에 한함. 일수계산은 대출 및 반납일을 포함한다.
	" 의자	"		
	회전무대	"	2,400	
	음향판	"	2,400	
	오케스트라빗트	"	2,400	
	삼각형 덮마루	개	600	
	사각형	"	960	
	무대용계단	"	600	
	덮마루다리	"	360	
악보대 및 악보정	일	2,400		
영사장치	에르네망영사기	식	7,200	1회 5분 이내
	심프렉스	"	2,400	
	릿슈시사	권	240	
	녹음	"	240	
	선전영화	일	1,200	

별표제 3 호 냉난방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 관

냉난방료징수기간 (냉방은 6월 15일~8월말
난방은 11월 15일~3월말)

구 분	시 간	오 전	오 후	야 간	비 고
대 강 당		17,280	24,480	24,480	
소 강 당		1,440	2,040	2,040	
별 관		1,200	1,440	1,440	
신 관		1,680	2,400	2,400	

2. 부 속 실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구 내 식 당	월	24,000	6월 11월은 반액
구 내 다 방	"	12,000	"
구 내 이 발 소	"	3,600	"
예 식 장 의 상 실	"	2,400	"
예 식 장 잡 무 실	"	2,400	"
예 식 장 미 장 실	"	4,800	난방에 한함.
예 식 장 사 진 실	"	1,000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7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3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입의무자의 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관내의 수거지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종 별	등 급	금 액 (월액)
진 개	1	120
	2	110
	3	85
	4	60
	5	40
	6	25
다량오물	기 타	25
	차량 1 대당 (4.5톤기준) 10키로그램	2,000 원 5 원
	분 뇨	통당 (18ℓ임) 15 원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세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8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76조제 1호중 "1,000분의 1"를
"1,000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
시계획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1972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 1항중 "1,000분의 1"를
"1,000분의 2"로 하고 동조 제 2항
중 "1,000분의 0.5"를 "1,000분
의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197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90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진료비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 수가기준표 8.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입원료

등급	일 수	금 액
특 등	1 일	1,400 원
1 등	1 일	900 원
2 등	1 일	600 원
3 등	1 일	400 원

다만 식사 및 침구일체를 제공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월 20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유
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91호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별표 1 - 5 다음에 별표 1 - 6와
별표 1 -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6

가. 도로 및 노선명

서울특별시 강변 3로

나. 정 수 구 간

자 : 용산구 한강로 3가 140

지 : 마포구 합정동 139

다. 정 수 기 간

자 : 1972. 1. 1

지 : 1988. 3. 31

라. 요 금 액

차 종 별	요 금	비 고
승 용 차	30 원	
3 른 차	30 원	
2 른 차	20 원	
화 물 차 량	40 원	
버 스	50 원	
특 수 차 량	130 원	

별표 1 - 7

가. 도로 및 노선명

강변 5로 유료도로

나. 정 수 구 간

자 : 영등포구 동작동 산 45

(국립묘지앞)

지 : 성동구 신사동 제 3 한강교

다. 정 수 기 간

자 : 1972. 1. 1

지 : 1986. 12. 31

라. 요 금 액

차 종 별	요 금	비 고
승 용 차	20 원	
3 른 차	10 원	

차 종 별	요 금	비 고
2 른 차	10 원	
화 물 차 량	20 원	
버 스	30 원	
특 수 차 량	60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92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항중 " 7,000 Kcal " 다음에
" 및 24,000 Kcal "를 삽입하고 동조제 2호를 삭제한다.

제 18조제 1항중 " 별표제 1 " 다음에
" 및 별표 1 - 2 "를 삽입한다.

별표 1 다음에 별표 1 -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2 요 금 표

<표준열량 24,000 Kcal >

구 분 용 도	개월기본요금		초과 사용 요금		비 고
	기본량	기 본 요 금	사 용 량 구 분	m ³ 당 단 가	
가 사 용	3 m ³	360 원	기준예정 사용량 10m ³ 까지	120 원	
			기준예정 초과사용량	15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72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94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제 1 조 (목적) 도시계획법 제 75 조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
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
임된 사항의 심의.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3.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
의한 사항

제 3 조 (심의대상사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2.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경미한
위치변경 (그도로폭원범위내의 좌우변
경)
3. 시내버스정류장
4. 폭 12미터이하인 준용하천 및 구거
와 이들의 복개에 한하되 복개에 있
어서는 폭 3m미만이거나 도로로 사
용하기 위한 하천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
장 각 1인과 위원 15인이내로 구성된
다.

②위원장은 제 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시계획시설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④관계공무원이 위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
로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등의 직책) ①위원장은 위
원회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
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
별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위원은 위원회위원중에서 호
선하되 5인이내로 한다.

③소위원회에 책임위원회를 두고 소위
원회의 임무를 통할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조 (상임위원) ①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임명하되 유급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9 조 (감사, 서기 및 조사원) ①위원회에 감사, 서기 및 조사원 약간인을 둔다.

②감사는 도시계획과장, 서기는 도시계획과 운영계장이 되며, 조사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유급으로 한다.

③감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조사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제 10 조 (수당 등의 지급)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수 있다.

제 12 조 (회의외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회의록) 감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사업소 직제 폐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한다.

1972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195 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

직제 폐지에 관한 규칙

1970년 6월 24일자 서울특별시규칙

제 1030 호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사업소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1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196 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동부 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과 서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토목기좌로 역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제 4 조 " 동부 및 남부건설사업소 " 를

" 동부, 남부 및 서부건설사업소 " 로 하고

제 1 항중 " 동부사업소 및 남부사업소 " 를

" 동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

업소 및 서부건설사업소"로 한다.
제 6조를 삭제하고 제 7조를 제 6조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사업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표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부건설사업소	동대문구용두동 663번지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남부건설사업소	영등포구노량진동 13번지	용산구, 영등포구
서부건설사업소	서대문구홍제동 292번지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역청사업소	동대문구면목동	

부 칙

구청 (출장소, 등포함) - 구청장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74 조제 2 호중 "총무과장"을 "부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2 년 1 월 27 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 1197 호

1972 년 1 월 31 일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198 호

제 3 조,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청소의 인사담당자

제 13 조제 4 항중 "2원"을 "5원"으로 한다.

가. 본청은 실, 과주무계장

나. 구청은 총무과장

다. 지하철건설본부, 한강건설사업소와

공무원교육원은 주무과 주무계장

라. 기타사업소는 주무과장 (과제를 채택하지 않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또는 사무장)

별표제 1 호 급수종별구분표 " 1. 가 사용 : 시민주거용 급수 및 본표의 타급수종별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용 급수 " 을 " 1. 가 사용 : 시민주거용 급수 다만 10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세대당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조례 별표제 2 호의 가사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총량을

제 6 조제 1 항중 "시장의"를 삭제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한부 자격요건 심사권자는 다음과 같다.

본청, 사업소 - 시장

사용세대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의 1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로 동표 2. 15 적요란중 "용도가 주택전 용이 아닌 4 층이상의 건축물"을 이 규칙 급수 종별구분표 각항에 명시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4 층이상의 건축물"로 동표 2. 16 적요란중 "영업용도나 종사원 및 내 객용으로 월 60㎡ 정도 급수가 소요된 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한 급수"를 "①위에 제기한 업체의 영업용도나 종 사원 및 내객용으로 월 60㎡ 이상의 급수가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 한 급수 ②영업용 제 2종에 해당하는 2 개이상의 업체가 단일 양수기를 경 유하여 급수를 사용할때"로 " 8. 특수 용 : 관공서, 병영, 학교, 철도, 관영종합 병원, 대학부속병원, 일간신문사등에 대한 급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

당 사회단체, 병영, 학교, 철도, 관영 또 는 대학부속병원, 신문사, 방송국등에 대 한 급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 년 1 월정수분부터 적용 한다.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 년 1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199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배점기준표 및 별표 2 취소처분기준표를 별지와 같 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배점기준표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 점	개 정 사 유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 5 조	5	야간신호위반은 사고요인 행위
	야간(신호봉)신호위반	"	5	
2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간운행 (일반통행포함)	제 6 조 1,2항	5	
3	혼합완화조치불응	제 7 조	5	
4	가. 진행로위반(차선)(일반도로)	제 11 조의 2	5	사고요인 행위
	" (고속)"	"	10	
	나. 중앙선침범	제 11 조	10	
5	우선순위위반	제 12 조	5	
6	횡단위반	제 14 조	5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배 점	계 정 사 유
7	후진위반	제 14 조	5	
8	회전위반	"	5	
9	제차간의 안전거리 확보불이행 가. 일반도로 나. 고속도로	제 15 조 "	5 10	사고요인행위
10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제 16 조	10	
11	부당한 앞지르기	제 17 조	10	
12	앞지르기 금지위반	제 18 조	10	
13	건널목통과시 일단정지위반	제 20 조	20	
14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제 21 조	5	
15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 23 조	20	
16	진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및 의양의무위반	제 24 조	10	
17	시행위반	제 26 조	5	
18	우선멈춤(일시정지)위반	"	10	
19	정차위반	제 27 조	5	
20	주차위반	제 28 조	10	도심지교통유통저해행위
21	주, 정차방법 및 장기정차위반	제 29 조	10	
22	제차의 동화조작의무위반	제 30 조	5	
23	제차의 신호의무위반	제 31 조	5	
24	적제량초과 (일반도로)	제 33 조	5	
25	" (고속도로)	"	10	사고요인행위
26	정원초과 (출퇴근시는 제외) 5-10% 이하 (승용화물포함)	"	5	
27	정원초과 (출퇴근시는 제외) 11% 이상	"	10	화물자동차계의
28	자동차의견인제한위반	제 34 조	5	
29	정비불량 (제동, 조향, 주행행장 치)	제 35 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 업수 고발
30	가. 무면허운전 나. 무면허운전자를 운전케 한 행위 (면허증소지운전자)	제 38 조 제 44조 7항	입 건 20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 점	개 정 사 유
31	음주운전 (알콜성)	제 39 조	20	사고요인행위
32	과로운전 (고속도로에 한함)	제 40 조	10	
33	위험방지 지시위반	제 41 조	5	
34	속도위반제한시속 10 킬로이하	제 42 조	5	
35	" 시속 20 킬로이상	"	20	
36	안전운전의무위반	제 43 조	5	
37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불이행	제 45 조 1, 2 항	20	
38	면허증체시의무위반	제 64 조	10	
39	면허증불휴대	"	20	
40	면허증납부의무위반	제 66 조	5	
41	운전자준수사항위반 (오토, 오수, 비수)	제 44 조 1 항	5	
	① 어린이가 보행시 우선멈춤 또는 시행위반	" 2 항	20	
	② 보행자횡단보도통행시 일시정 지 또는 시행위반	" 3 항	20	
	③ 개문운행	" 5 항	10	
	④ (교양미필 2 회마다)	" 7 항	5	
	⑤ (운전자교양카드물휴대)	"	5	
	⑥ 월동창구불소지 (12-3 월)	"	5	
	⑦ 승차운행도중급유	"	10	
42	부경입산물운반	입산물단속법 제 5 조 2 항	20	
43	검사증불소지	도로운송차량법 제 58 조	5	
44	차량보안기준위반 (불법부착물 소 화기, 속도계불비치)	제 39 조 제 42 조	10	
45	검사증반납의무위반	제 57 조 1 항	5	
46	자동차제증표부정행사	제 78 조	10	
47	임시운행허가증반납의무위반	제 33 조 5 항	5	
48	임시운행증불소지	제 34 조 1 항	5	
49	승차거부 (도중하차강요포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 조	20	

위 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 점	개 정 사 유
50	부당요구정수	제 8 조	20	
51	관자가용영업행위	제 58 조	20	
52	택시미터기불사용	제 24 조	10	
53	승무원의 불친절행위	자동차운수규칙법 동운수규칙제 2 조	5	
54	노선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동운수규칙제 4 조	20	
55	택시합승행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 조	10	
56	교장등의 경우의 조치위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 10 항	10	

별표 2

취 소 처 분 기 준 표

위 련 번호	위 반 종 별	적 용 법 위	처분기준내용
1	타인번호표사등은행	도로운송차량법 제 4 조	취 소
2	번호표입의제거은행	" 제 10 조	"
3	무적차량운전	" 제 4 조	"
4	부정입산물운반	부정입산물 단속법 제 5 조 1 항	"
5	적정검사미필	도로교통법 제 61 조	"
6	행정처분기간중운전	" 제 65 조 5 항	"
7	운전자결격사유	" 제 57 조	"
8	사고야기도주	" 제 45 조	"
9	타인면허대여 (분실자, 도난자는 제외)	" 제 55 조	"
10	출두기일경과불출두	" 제 65 조 2 항	"
11	정월초과 (버스에 한하며 출퇴근 시제의 30 명이상)	" 제 33 조	"
12	교통사고 (1) 위반점수초과	" 제 65 조 3 항	"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0 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 (행정과) ① 행정과에 행정계, 지도계와 행정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계

- 가. 구, 동행정조정 및 통계
- 나. 구행정시책의 수립 및 운영
- 다. 구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구역변경
- 라. 지방장관회의
- 마. 구행정관계회의
- 바. 모범 통, 반장 및 시민표창
- 사. 구청비 예산편성 및 구별배정과정 조정
- 아. 구청에 배정하는 사업비예산의 배정계획협의
- 자. 구, 동공무원의 인사대신에 대한 협의 및 내신(행정직에 한함)
- 차. 과내 타계 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도계

- 가. 구행정의 지도감독
- 나. 구행정 실적심사
- 다. 시의회에 관한 사항
- 라.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마. 기부금품 및 각종잡부금의 모집통제와 지도

바. 구, 동관계 진정처리

사. 구, 종합 감사지원

아. 새마을사업추진

자. 시민의 대학 운영

3. 행정관리계

- 가. 사무관리개선 및 능률향상
- 나. 민원사무 처리 지침 및 지도
- 다. 위임 전결권의 구분 및 사무이양 계획수립
- 라. 민원사무편람의 작성 및 유지관리
- 마.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 바. 시민조직 및 운영
- 사. 단위업무 및 관리직업무개선 연구발표회
- 아. 제안제도 및 아이디어뱅크운영
- 자. 호적, 인감에 관한 사항
- 차. 행정서사 및 소개영업 지도감독
- 카. 구행정관계 성안문서 및 회의통제
- 타. 표준동 육성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중 "마" 와 "바" 를 삭제한다.

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 조 (서무과) ① 서무과에 관리계, 정리계와 처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 가.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 나.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지장물의 이전 및 보상

- 다. 대형축량업체지도감독
- 라. 국내에산의 총괄
- 마. 구획정리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과 우선순위 결정
- 박. 토지구획정리비 예산의 조정통제
- 사. 도시계획 관계자금수급
- 아. 관내서무 및 국내타과, 계수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정리계

- 가. 토지구획정리분담금 과징
- 나. 청산금 명세작성 및 과징
- 다.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 라.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
- 마. 각종 징수금 체납처분

3. 처분계

- 가. 체바지처분
- 나. 기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용지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제 2 항중 제 2 호와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 제 1 계

- 충구, 서대문, 마포, 용산, 영등포지역의
- 가. 건축선 지정
- 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설계검토 현지조사 및 기술사항에 대한 의견과 복명 (응벽, 석축 및 공작물 포함)
- 다. 건축허가원 사항에 대한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 라. 건축공사의 준공검사에 대한 현지조사 허가내용과의 확인검토와 기술사항에 대한 의견과 복명

(신축건물에 따른 수세식변소의 정화조, 응벽, 석축 및 공작물포함)

- 마. 건축물 구조감정 및 구조역학
- 바.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 사. 옥내주차장에 관한 사항
- 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 자. 축대에 관한 안전도 검사 및 위험축대에 관한 사항

3. 건축 제 2 계

종로, 동대문, 성동, 성북지역의

- 가. 건축선 지정
- 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설계 검토 현지조사 및 기술사항에 대한 의견과 복명 (응벽, 석축 및 공작물 포함)
- 다. 건축허가원 사항에 대한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 라. 건축공사의 준공검사에 대한 현지조사 허가내용과의 확인검토와 기술사항에 대한 의견과 복명 (신축건물에 따른 수세식변소의 정화조, 응벽, 석축 및 공작물포함)
- 마. 건축물구조감정 및 구조역학
- 바.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 사. 옥내주차장에 관한 사항
- 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 자. 축대에 대한 안전검사 및 위험축대에 관한 사항

제 3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4 조 (사회과) ①사회과에 사회계, 노동계와 구호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사회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계

- 가.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 나. 시민복지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입안
- 다. 시민생활의 보호 개선지도
- 라.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인가,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모자관계 시설제외)
- 마. 파월장병지원 및 가족의 원호에 관한 사항
- 바.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의 원호 및 보호
- 사. 자립능력이 없는 무의무탁자의 보호
- 아. 사회사업가의 교육훈련
- 자. 시영갱생원, 양로원의 지도감독
- 차. 과내서무 및 국내 타과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노동계

- 가. 노동행정의 조사입안
- 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다.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 라.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마.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 바. 시노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사. 시립근로자합숙소, 근로복지와 운영의 감독

3. 구호계

- 가. 요구호자의 조사 및 곤궁한 자의 구호
- 나. 재해의 조사와 대책수립 및 구호
- 다. 구호양곡 및 구호금품의 수집관리 및 배정
- 라. 후생식당 운영유지
- 마. 자조근로 구호계획수립 및 사업장 관리

- 바. 지방구호 협의위원회 운영
- 사. 의원도입구호물품 사후관리
- 아. 응급구호와 병어병사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제 43조제 1항중 "도매시장제"와 제 2항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를 제 2호로 하며, 제 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정계

- 가.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 나. 시장계획 및 후보지 선정과 개설
- 다. 시장관계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 라. 도매시장운영 및 지도감독
- 마. 도매시장 개발계획수립 및 품목조정
- 바. 회정기금 운영
- 사.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 아. 과내서무와 국내타과, 제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53조제 1항중 "특수시설제"와 "특수시설계장" 및 제 2항제 3호를 삭제하고 제 4호를 제 3호로 제 5호를 제 4호로 하며,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목계

- 가. 토목에 관한 조사계획 및 자료의 종합정리와 관련 공사계획의 조정
- 나. 일반도로, 도로공작물 및 부속물의 개량과 유지보수
- 다. 토사도의 유지보수
- 라. 평면 교차부 가로의 개량 및 도류화 시설에 관한 사항
- 마. 일반도로상의 보행용 육교의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관리

바. 고가도로, 고속도로, 유료도로의 신설에 따르는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관리
 사. 지하도 및 지하광장 지하도시 시설물의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아. 시가부도로상의 독립된 구조의 입체교차로 시설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1 호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 중 "서무계, 관리계와 자재계"를 "서무계와 관리계"로 하며, 제 2 항 제 3 호를 삭제하고 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계

- 가. 노무자동원 및 공급계획
- 나. 노무원 숙식관리
- 다. 각종 장비와 자재의 구입, 조정과 출납
- 라. 장비의 운영 및 정비와 창고관리
- 마. 토판 및 부록류의 제작, 설계감독
- 바. 공사용 석재의 생산
- 사. 생산품출납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합숙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2 호

서울특별시근로자합숙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근로자합숙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3 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 "관제계" 다음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제외)"를 추가하고 제 2 항 제 1 호말미에 "하. 시유재산의 관리, 매각임대과 대금의 수납(성동, 성북, 서대문, 영등포구제외)"를 추가하며, 제 2 호말미에 "차. 동행정재산의 관리"(성동, 성북, 서대문, 영등포구제외)"를 추가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 (사회과) ①사회과에 사회계와 부녀계를 두고 계장을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사회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계

- 가. 후생에 관한 사항
- 나. 구호에 관한 사항
- 다. 노인정 및 실비식당에 관한 사항
- 라. 매화장 개장의 허가
- 마. 묘지 및 화장장의 사용허가
- 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사.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
- 아.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자.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차. 실업자 근로구호
- 카. 과내 타계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부녀계

- 가. 부녀와 청소년 지도교양
- 나. 부녀자의 권익증진
- 다. 건전 가정육성
- 라. 불우여성의 보호선도
- 마. 영세가정 계몽선정
- 바. 여성단체 지원육성
- 사. 부녀지도자 양성
- 아. 가정부업지도
- 자. 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 및 여성법적지위향상과 부녀복지 조장에 관한 사항
- 차. 부녀 및 아동시설 (모자원, 탁아소)에 관한 사항
- 카. 기타부녀 및 아동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제 1 항 중 "환경계"를 "가로정비계"로 "환경계장"을 "가로정비계장"으로 하며, 제 2 항 제 3 호 "환경계"를

"가로정비계"로 한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 (건축과) ①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건축과에는 주택계, 단속계, 건축제 1 계와 건축제 2 계를 두고 기타구에는 건축제 1 계와 건축제 2 계를 둔다.

②주택계장과 단속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건축제 1 계장과 건축제 2 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할 수 있다.

③건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제 1 계와 건축제 2 계는 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을 조정한다.

1. 주택계

- 가.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 나. 주택건설에 관한 계몽
- 다. 불량건물 개량
- 라. 시영주택건설 후보지선정
- 마.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 바. 시영주택의 관리
- 사.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 아. 아파트 입주자의 선정 및 생활지도
-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 차. 과내 타계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단속계

- 가.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 나. 무허가건물의 철거단속
- 다. 위법건축물의 철거
- 라. 무허가건물에 관한 진정처리
- 마.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3. 건축제 1 계

가. 구역별 건축허가 착공검사 및 준공검사

공검사

나. 구역별 건축공사의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공사감독

다. 구역별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 취소 및 고발

라.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마.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바. 구역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사.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로구, 중구, 용산구제외)

4. 건축제 2제

가. 구역별 건축허가, 착공검사 및 준공검사

공검사

나. 구역별 건축공사의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공사감독

다. 구역별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취고 및 고발

라. 축대의 안전도 검사 및 위험축대에 관한 사항

마. 영선에 관한 사항

바. 시영주택 (아파트) 건축 및 보수공사

공사

사. 구역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통보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4호

서울특별시정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

별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 명	정 원
비서 (3급갑류상당)	1
비서 (3급을류상당)	5
비서 (4급갑류상당)	1
동장 (3급을류상당)	307
별정 직 제	314
지방시설계감	2
2급갑류	2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감	8
2급을류계	9
지방서기관	33
지방전기기정	1
지방화공기정	1
지방의무기정	9
지방보건연구원 (3급)	1
지방토목기정	8
3급갑류계	53
지방행정사무관	253
지방기계과	7
지방전기과	8
지방화공과	3
지방농림과	6
지방축산과	2
지방수의관 (3급을류)	1
지방의무과	21
지방약무과	9
지방보건과	3
지방간호과	9
지방보건연구원 (3급을류)	5
지방수산과	1
지방토목과	47
지방건축과	15
3급을류계	390
지방행정주사	833
지방전기기사	20
지방화공기사	29
지방농림기사	6
지방축산기사	11
지방수의사	1
지방약무기사	8
지방보건기사	11
지방간호기사	54
지방보건연구원	34
지방수산기사	7
지방토목기사	1
지방건축기사	120
지방방직	29
지방방직	10

직 명	정 원
지 방 통 신 기 사	3
4 급 갑 류 사 계	1,177
지 방 행 정 주 사 사 보	801
지 방 기 계 기 사 사 보	21
지 방 전 기 기 사 사 보	25
지 방 화 기 기 사 사 보	12
지 방 농 림 기 사 사 보	11
지 방 축 산 의 사 사 보	3
지 방 수 의 사 사 보	13
지 방 약 무 기 사 사 보	16
지 방 보 무 기 사 사 보	57
지 방 간 호 기 사 사 보	63
지 방 보 건 연 구 사 사 보	7
지 방 수 산 기 사 사 보	1
지 방 토 목 기 사 사 보	157
지 방 전 축 기 사 사 보	41
지 방 지 적 기 사 사 보	7
지 방 통 신 기 사 사 보	2
4 급 늘 류 계	1,237
지 방 행 정 서 기 기 원	1,597
지 방 기 계 기 기 원	17
지 방 전 기 기 기 원	21
지 방 화 기 기 기 원	9
지 방 농 림 기 기 원	14
지 방 축 산 의 기 원	4
지 방 수 의 기 원	10
지 방 약 무 기 기 원	21
지 방 보 무 기 기 원	56
지 방 간 호 기 기 원	101
지 방 보 건 연 구 기 원	5
지 방 토 목 기 기 원	133
지 방 전 축 기 기 원	38
지 방 지 적 기 기 원	9
지 방 통 신 기 기 원	1
5 급 류 계	2,036
지 방 행 정 서 기 기 원	2,665
지 방 기 계 기 기 원	14
지 방 전 기 기 기 원	12
지 방 화 기 기 기 원	3
지 방 농 림 기 기 원	15
지 방 축 산 의 기 원	9
지 방 수 의 기 원	20
지 방 약 무 기 기 원	33
지 방 보 무 기 기 원	118
지 방 간 호 기 기 원	9
지 방 보 건 연 구 기 원	95
지 방 토 목 기 기 원	67
지 방 전 축 기 기 원	33
지 방 지 적 기 기 원	33
5 급 류 계	3,093
1 급 내 지 5 급	263
고 능 용 직 원	1,774
계	2,037
합 계	10,348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5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포 서별 서울중부경찰서 명칭란중 "남산 2가 파출소"를 "퇴계로 2가 파출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6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 1항중 "지방건축기사, 지방건축기사보"를 "지방기계기사, 지방기계기사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2. 1. 1.

조건부지방행정주사 정 겹 식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명함

◎ 1972. 1. 6.

지방조무수 조 병 권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중구근무를 명함

지방조무수 정 응 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명함

행정주사 옥 유 영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업과 근무를명함

기계기사 강 무 봉

운수행정과 근무를명함

◎ 1972. 1.10.

지방약무기사 손 기 성

동부 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약무기사 김 상 우

아동 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약무기사 김 석 주

영등포 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약무기사 최 갑 래

마포 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건축기원보 서 장 범

지방공무원법 제 36조제 1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72. 1.11.

지방행정주사 허 만 섭

감사과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최 학 현

명우리묘지 사무소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사보 신 춘 희

원에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2. 1.13.

행정주사 홍 기 화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운영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윤 철 환

기획과 (시정연구단요원)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송 인 현

동대문구 시민봉사실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송 용 석

관광과 관광사업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이 범 운

아파트관리과 수납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비서관 방 일 호

통계과 통계기준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2. 1.15.

지방비서관 박 사 하	6 호봉을 급함
원에의하여 그직을면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명함
지방행정사무관 김 희 수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이 은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규정에 의거 감봉1 월에	6 호봉을 급함
처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명함
지방행정사무관 임 태 승	지방보건연구사보 조 성 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규정에 의거 견책에처함	4 호봉을 급함
지 방 전 공 김 수 열	세정과 근무를명함
중구 근무를명함	지방건축기좌 한 기 설
지 방 전 공 이 명 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3 호에
중구 근무를 명함	의거 감봉6 월에 처함
지 방 전 공 전 태 수	◎ 1972. 1. 17.
영등포구 근무를명함	지방토목기원보 김 호 정
지 방 전 공 손 동 환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영등포구 근무를명함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 이 학 모	휴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 1972. 1. 18.
규정에의거 감봉3 월에처함	지방행정주사 이 병 수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유 근 무	원에의하여 그직을명함
지방 토목기사보에 임함	◎ 1972. 1. 19.
6 호봉을 급함	지방서기관 이 재 홍
환경과 근무를명함	원에의하여 그직을면함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박 영 군	환지 1 제장 김 종 성
지방 토목기사보에 임함	원에의하여 그직을면함
6 호봉을 급함	◎ 1972. 1. 20.
교통연구단 근무를명함	지방행정서기보 오 수 현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김 병 준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6 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명함	서대문구 근무를명함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민 성 기	지방행정서기보 양 재 평
지방 토목기사보에 임함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명함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철	토 목 기 좌 장 옥 환 서부건설사업소 소장직무 대리를 명함 ©1972. 1.22.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박 판 영	지방건축기좌 한 중 권 건축과 건축제 1 제장에보함 지방건축기사 권 옥 성 건축과 건축제 2 제장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명함 지방행정주사보 성 용 락	지방건축기좌 안 중 희 종로구 건축과장에보함 지방건축기좌 허 작 동대문구 건축과장에보함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명함 ©1972. 1.21.	지방건축기좌 유 태 현 성북구 건축과장에보함 지방건축기좌 이 은 학 서대문구 건축과장에보함 지방건축기좌 한 기 설
지방조무보조수 조 백 래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지방조무보조수 민 유 식	마포구 건축과장에보함 건축기정 유 병 화 건설국 영선과장에보함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지방토목기사 조 병 현	건축기정 한 기 호 도시계획국 건축과장에보함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지방토목기사보 심 진 섭	지방건축기사 이 원 준 북직을 명함 중구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지방토목기원 신 중 선	명함 ©1972. 1.25.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지방 토목기원보 최 해 인	지방화공기원보 김 중 국 원에의하여 그직을명함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기한부공무원 윤 영 균	©1972. 1.26.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지방기계기원보 양 흥 구	윤 진 규 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임함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명함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임 함
아동병원 근무를명 함
서 해 선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 함
박 춘 욱 ©1972. 2. 1.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임 함
오류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 함
지방수의 사보 연 훈
서울특별시 전입을명 함
지방수의 사보에 임 함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임 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명 함
지방약무기원 이 진 형
김 신 자 2호봉을 급 함
성동보건소 근무를명 함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임 함
등대문구보건소 근무를명 함
서울특별시 전입을명 함
지방약무기원에 임 함
5호봉을 급 함

조건부 지방간호기원보에임 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명 함
약 무 사 장 영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명 함

지방약무기원보 현 석 오 지방약무기사보에 임 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명 함
1호봉을 급 함
©1972. 1.28. 서대문보건소 근무를명 함

기한부공무원 (지방토목기원보
김영수의 군복무휴직중) 에
임 함
지방약무기좌 임 제 승
남부병원 약제과장예보 함
지방약무기좌 조 성 국
서대문병원 약제과장예보 함
5급 7호봉을 급 함
지방약무기좌 김 영 식

구획정리제 1과 근무를명 함
중부병원 약제과장예보 함
©1972. 1.29. 지방약무기사보 전 미 숙

지방약무기좌 장 봉 순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 함
원에의하여 그직을면 함
지방보건기원 김 선 국

조건부지방의무기좌 박 삼 균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 함
원에의하여 그직을면 함
지방간호기사 조 애 형

지방약무기좌 최 명 식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 함
원에의하여 그직을면 함
지방간호기사보 배 욱 남

©1972. 1.31.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 함

지방토목기원보 김 기 홍 지방간호기원 조 욱 자

0816

62-29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안 종 님	지방행정서기보 한 현 택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행정서기보에 임함
©1972. 2. 8.		1호봉을 급함
	김 영 식	공무원교육원 근무를명함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행정서기보 김 훈
	조 성 국	행정서기보에 임함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4호봉을 급함
	임 재 승	공무원교육원 근무를명함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기제기사보 차 병 춘
©1972. 2. 9.		운수지도과 파견근무를명함
	김 준 곤	지방기제기사 윤 병 헌
기한부공무원 (지방건축기원보		운수지도과 근무를명함
박창식의 군복무휴직기간중)		지방기제기사 박 덕 응
에 임함		기전과 근무를 명함
5급 6호봉을 급함		지방기제기사 김 윤 익
아파트관리과 근무를 명함		운수사업과 근무를명함
©1972. 2.15.		지방축산기사보 박 용 하
	백 은 균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임함		지방축산기원보 김 동 력
의약과 근무를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황 덕 주	지방토목기사보 박 석 곤
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임함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의약과 근무를명함		지방화공기사보 홍 정 선
	오 석 문	보광동수원지 사무소
조건부 지방수의원보에임함		파견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명함		지방화공기원 송 응 기
	허 인 흥	보광동수원지 사무소
조건부 지방수의원보에 임함		파견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명함		지방화공기원보 장 원 수
	고 명 도	보광동수원지 사무소
행정주사에 임함		파견근무를명함
3호봉을 급함		지방화공기원보 노 병 일
노동위원회사무국 근무를명함		보광동수원지 사무소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	김 해 열	지방보건연구사	김 기 동
건설부 진출을 명함		지방약무기사에 임함	
조건부지방간호기사	김 순 일	5호봉을 급함	
지방간호기사에 임함		정신병원약제과장직무대리를명함	
6호봉을 급함		지방약무기사	박 홍 진
성동구보건소 근무를명함		중부병원 약제과장	
조건부지방간호기사보	김 은 란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간호기사보에 임함		지방약무기사	정 동 연
6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약제과장	
보건제 1과 근무를명함		직무대리를 명함	
◎1972. 2.16.		지방행정주사	조 성 두
지방서기관	안 병 채	행정주사에 임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에보함		인사과 근무를명함	
지방서기관	안 중 윤	지방보건연구사	김 기 동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약무기사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에보함		5호봉을 급함	
◎1972. 2.18.		정신병원약제과장직무대리를명함	
행정주사	이 철 우	지방기계기원	김 인 석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지도계장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	
직무대리를 명함		제 3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을명함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순	지방행정서기보	이 건 혁
부녀과 부녀보호계장에보함		노동청 진출을명함	
지방행정주사	박 국 자	◎1972. 2.23.	
근우회관장 직무대리를명함		지방전기기사	김 석 주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철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복직을 명함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명함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1972. 2.21.		지방행정사무관	김 정 훈
약 무 기 좌 윤 준 식		원에의하여 그직을면함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1972. 2.24.	
지방약무기좌에 임함		지방행정사무관	이 두 행
1호봉을 급함		지방공무원법제 69조 2, 3호의	
남부병원 약제과장에보함		규정에의거감봉6월에처함	
		◎1972. 2.28.	
		약 무 기 좌 윤 준 식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약무기좌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남부병원 약제과장에보함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1 호

서울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소로망결정
서울 도시계획 가로 일부 변경 및
소로망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
법 제 13 조 규정에 의하여 계획 결정과

지적승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함.

관계 도시를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와 관할 구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6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가. 가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폐지	중로	2		15m	330m	홍제동 산 33-32	홍제시민아파트입구	건설부고시 제 667호 (71.11. 26)
신설	소로	1		10	330	"	"	
"		2	2-1	8	220	시민아파트 진입로 중간지점	홍제동 산 33-54	
		2	2-2	8	209	홍제동 산 33-63	홍제동 산 33-63	
		3	3-1	6	290	"	홍제동 산 33-54	
		3	3-2	6	54	홍제동 산 33-63 아파트순환도로	홍제동 산 33-63	
		3	3-3	6	150	아파트진입로남단	홍제동 산 33-63	
		4	4-1	4	154	태진 제 1 아동공원	홍제동 산 33-54	
		4	4-2	4	104	홍제동 산 33-63	홍제동 산 33-64	
		4	4-3	4	95	태진 제 2 아동공원	2-2호선	

나. 공원변경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태진 제 1 아동공원	홍제동 산 33-65	640 m ²	건설부 고시 제 667호 (71.11.26)
변경	"	홍제동 산 33-65 홍제동 산 33-62	640	
기정	태진 제 2 아동공원	홍제동 산 33-63	400	
변경	"	"	400	"

(도면생략)

※건설부 고시제 667 호
서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
업중 다음과 같이 일부 시설을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1. 11. 26.

건설부장관

가. 도로변경 결정조서 : 별첨 나. 공원 " : 별첨 가. 도로변경 결정조서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끝.
---	---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폐 지	중 로	2		15m	330m	홍제동 산 33-32	시민아파트 입구

나. 공원변경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태진제 1 아동공원	홍제동 산 33-65	640 m ²	위 치 변 경
변 경	"	홍제동 산 33-65 홍제동 산 33-62	640	
기 정	태진제 2 아동공원	홍제동 산 33-63	400	
변 경	"	"	400	위 치 변 경

◎서울특별시 고시제 2 호

도시계획 소로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중 영등포 일부지역 (봉천·신정·목동 일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로로 확정되었기 다음과 같이 고시함.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7.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소로 확정조서 (별첨 생략)

2.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서울특별시 고시제 3 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및 성북구 정능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소로 일부 변경 및 폐지를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3. 노선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12	10m	124m	성수동2가 333-5	성수동2가 339-3	일부폐지
폐지	"	"	"	"	"	"	"	"
기정	"	1	113	10	208	"	성수동2가 335-1	폐지
폐지	"	"	"	"	"	"	"	"
기정	"	2	143	8	108	"	"	"
폐지	"	"	"	"	"	"	"	"
기정	"	2	134	8	70	정능동 169의 16	정능동 169-4	일부선형변경
변경	"	"	"	"	62	정능동 169의 18	정능동 169-4	"

1972. 1.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소로신설

1. 서울특별시 관내 성동구 옥수동 도시계획 소로 신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고시함.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노선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M	72M	옥수동 449-3	옥수동 454	
"	"	2		8	92	" 432	" 429	
"	"	3		6	50	" 454	" 455	
"	"	3		6	118	" 452	" 435	
"	"	3		6	27	" 430	" 426	

1972. 1.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5호

도시계획 소로 신설 및 일부변경

1. 서울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불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변경을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및 성북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3. 노선신설 및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연장	비고
신설	소로	1	101	10M	188M	수유동 293-2	수유동 549	각각전체부분 일부 변경.
"	"	"	102	"	195	" 460	" 499	
"	"	"	103	"	265	미아동 62-8	미아동 450	
기존	"	3		6	50	구로동 62-3	구로동 415-5	
변경	"	"		"	"	"	"	

도면은 서울시청에보관.

1972. 1. 7.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 제 6 호

도시계획 소로 신설 및 변경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및 상도동 관내 도시계획 소로의 신설 및

-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3.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8M	100M	신림동 667-15	신림동 667-19	
기존	"	3		6	135	상도동 180-1	상도동 367-4 앞	
변경	"	"		"	"	"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에 보관)

1972. 1. 7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 제 7 호

도시계획 소로 결정 (확정)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들
2. 노선조서

-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함.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M	158M	신길동 153 의 15	신길동 202 의 133	
변경	"	"		"	160	"	"	
기정	"	4		4	40	대현동 67 의 18	대현동 67 의 20	22M 폐도
변경	"	"		"	18	"	대현동 67 의 73	

3. 도면: 별첨생략

1972. 1. 7.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제 9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방배동산 84-3·산 84-4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 칭 :

국군통합 법무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면적 : 9,043 평

3. 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육군본부 법무감실

국군통합 법무 주택단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대령 박 윤 상

4.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 1972. 1.

준공 1972. 10.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 명세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제 10호

도시계획 시설 (가로) 일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6호 (71.5.13)로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61-2 외 8 필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가로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함.

2.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11.

서울특별시장

가. 가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0-1	10M	165 M	신림동 409-4	신림동 산 161-6	
변경	"	"	10-1	10	165	" 409-1	" 161-6	
기정	"	2	8-1	8	297	산 161-6 (간선 20)	" 408-3	
기정	"	3	6-1	6	266	산 161-2 상부	산 161-6 상부	
변경	"	"	"	"	136	산 161-6	산 151-6 "	
기정	"	"	6-2	"	270	산 161-6 (간선 29)	산 161-6 "	
기정	"	"	6-3	"	155	소 6-1호 중간	소 6-2	
변경	"	"	"	"	348	산 161-5 (소 6-4)	산 161-6 (소 6-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4		333 M	소 6-8	소 6-2 상부	
변경	"	"	"		370	산 161-5	산 161-6 (소 6-2)	
기정	"	"	6-5		325	소 6-8	소 6-2 중간	
변경	"	"	"		322	산 161-5 (소 6-8)	산 161-6 (소 6-2)	
기정	"	"	6-6		325	소 6-8	소 6-2 하부	
변경	"	"	"		326	신림동 408-3	산 161-6 (소 6-2)	
기정	"	"	6-7		129	" 409-3	소 6-4	
변경	"	"	"		162	" 409-3 (소 8-1)	산 161-5 (소 6-3)	
기정	"	"	6-8		145	" 408-3	소 6-4 기점	
변경	"	"	"		124	" 408-3	산 161-5 (소 6-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서울특별시 고시제 11 호

결정하였기 고시함.

서울 도시계획 일부변경

관계 도서들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서울특별시 고시제 52 호 (71.7.15)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가로 시설중 일부들 다음과 같이 변경 가. 가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2		8 M	562 M	봉천동 산 17-3	봉천동 산 17-3	
변경	"	"		"	590	"	"	도로연장
당초	"	3		6	306	"	"	
	"	"		"	42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서울특별시 고시제 12 호

한강개발비 4,722,503,000 원

197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비 3,650,155,000 원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토지구획정리비 6,052,218,000 원

같이 고시함.

택지조성비 52,596,000 원

1972. 1. 7.

지하철건설비 8,815,004,000 원

서울특별시 장

하수처리장비 500,003,000 원

회계별 예산액

건설자재생산비 376,000,000 원

총 계 73,892,627,000 원

유료도로비 302,061,000 원

일반회계 35,950,404,000 원

시민회관비 84,650,000 원

특별회계 37,942,223,000 원

재해구호비 38,871,000 원

운수사업비 1,727,464,000 원
 수 도 비 11,620,698,000 원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천
 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울특별시 고시제 13 호

1972. 1. 18.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서울특별시장

허가 년월일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공작물개요	점용기간	허가받은자의 주소·성명
72. 1. 18	성북구정능 동 649-13 번지앞	251.6 m ² (76.2 평)	공작물설치 (복개)	복개 공사 길이 = 26 m 폭 = 3 m 높이 = 2.8 m 3 련	공사착공일로 부터 3 개월 간	성북구정능동 881- 11 번지 이 중 국

◎서울특별시 고시제 14 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1.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 1 과와 영등포구청 시민홀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음.

1972. 1. 2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당동 647의 26 의
 131 필지(사당동-남태령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당동-남태령 도로확장공사
 폭 : 30미터, 연장 : 2,400미터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1. 21 - 1972. 6.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
 첨

◎서울특별시 고시제 15 호

서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
 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집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산 112 의 1 외
 4 필지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명칭 : 송천주택단지

시행면적 : 5,970 평

3. 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745-32

심재길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1972. 1.

준공 : 1972. 5.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7. 인가내용

별첨 인가증 및 인가도서 (생략).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산 112의 1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명칭 : 송천주택단지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745-32

심재길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

5. 사업기간:

착공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 1972. 5.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생략)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2. 1. 22.

서울특별시장 (별첨 조서)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은 사업인가신청서와 설계도 및 설계서에 의거 시행하되 다음 인가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절차나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경계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지주 (9cm x 9cm 각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인가조건에 의거 시설규모가 변경되었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이 있을 시는 설계 변경하여 이를 맞도록 시공하되 본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설계도면에 각기 명시된 모든 종류의 공정은 빠짐없이 시공하며 그 주요공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도로·하수도·아동공원·상수도·포장·주차장·쓰레기 적환장·택지공사와 이

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4. 본 공사는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5. 공사집행에 있어 토사유출·낙반 등으로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착수전에 미리 대책을 하여야 하며 이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보상 또는 원상복구비 산정은 본시가 결정한다)

6. 본 지역의 임목벌채 등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저촉될 시는 이를 필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토지개발사업법 제 55조의 이행과 지적법 제 20조 규정에 의한 실시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인증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진척 사항은 1주 1회 감독관에게 1개월 1회는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지구내 배수시설은 시설구거 또는 하천에 연결 시공하되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택지조성에 있어서 석축 구조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를 초과할 시는 콘크릴용벽으로 구조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낮은 높이의 석축으로 시공할 것.

11. 포장 공사는 서울시 포장공사 시방서

및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상수도 시설은 서울시의 기 급수구역의 급수상황을 감안하여 배수관을 매설하되 서울시 급수조례 제 1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거 특수 가압시설 인가를 받아 수탁공사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본 사업구역내의 임목은 가능한 한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 이상의 벌채행위를 금지한다.

14. 공사완료후의 지구내의 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 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귀속시킨다.

15. 본 공사집행을 중도에 중단 또는 미시공하거나 변경 시공하는 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의 연장, 기타 인가조건과 행정지시에 위배 불응할 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 대 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본 시에서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사업집행을 종료케 하고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6. 본 사업을 완수키 위하여 귀하가 공사이행보증금을 예납한 바 본 예치금은 전항의 대 집행의 경우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 본 인가조건과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시행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은 사업집행자 부담으로 한다.

18. 사유지 보상은 대토, 교환 등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쟁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 책임부담으로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민사상 문제에 관하여는 본시에 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9. 이상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인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등시 본시의 지시내 따라 자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첨부.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16 호

서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 1. 서울 도시계획 사업이 도로신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등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 1 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2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도봉동노원교-성북구공능동간 도로신설공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로 신설공사

계획 : B = 25-35

시행 : B = 20, L = 6450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2. - 1972. 6.30.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의 주소·성명 : 생략

인 가 증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성북구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신설, 도봉동 노원교-공능동 간 도로공사
계획 : B = 25-35
시행 : B = 20, L = 6450
-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제 16 호
- 5. 사업기간 : 1972.2. - 1972.6.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를 별첨 설계도와 같이 인가함.

1972. 1.24.

서울특별시장

“ 인가조건 ”

- 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시공설계도서는 별첨 계약설계도서 (평면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시제 17 호
 공방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취소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취소를 공방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4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72. 1. 25.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 의 4 번지
 앞 구거
2. 허가규모
 길이 = 23 m, 폭 = 5.1 m
3. 허가목적
 북개후 통로
4. 취소일자
 72. 1. 25.
5. 허가받은 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4
 유일운영주식회사 대표 김동연

6. 취소사유
 준공기한내 공사미착공.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18 호
 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위치변경
 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위치를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
 가. 변경후위치 : 영등포구등촌동 532 의 1
 나. 변경전위치 : 영등포구문래동 3 가 76
 의 5. 끝.
 1972. 1. 27.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고시제 19 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매립
 법 제 7 조와 동법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72. 1. 27.
 서울특별시장

면허일	매립장소	매립면적	매립목적	준공기간	면허를받은자 주소·성명
72. 1. 27	서울특별시성동구 군자동 송정동 (전농천)	30,000 평	지하철 차고 부지 조성	착공일로부 터 2년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고시제 20 호
 도시계획 소토신설 및 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 가 및 영
 등포구 대방동 관내 도시계획 소토신
 설 및 일부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관할구정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3. 노선신설 및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4		4m	16m	종로 5 가	종로 5 가	
기선	"	1		10	730	대방동 293-1 앞	대방동 351- 앞	위치일부변경
변경	"	1		10	73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에 보관)
1972. 2. 7.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제 21호

도로계획 소로 결정고시 (확정)

1. 서울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 신설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2		8-10M	500 M	금호동(금북동)로타리	신림동 168-60	

4. 도면: 별첨.

1972. 2. 9.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제 22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 3조 제 3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다 음

197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행정 관할 전지역으로 한다.

1972. 2. 17.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제 23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 실시 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제 1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2. 18.

서울특별시청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교 - 구의동, 시계 - 위커·힐 - 광장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커·힐 - 구의동간 도로확장공사
폭: 12미터 연장 1,900미터
폭: 30미터 연장 1,500미터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2. - 1972. 6.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건물의 조서,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제 24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안)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 실시 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 1 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2.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성동구가락동-대왕교 시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락동-대왕교 간 도로 신설공사
폭 : 20미터, 연장 : 3,900미터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2. - 1972. 6.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건물의 조서,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인 가 증 (안)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성동구 가락동-대왕교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신설 (광로 1류 29번도로)

폭 : 20미터, 연장 : 3,900미터

3.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제 24호

5. 사업기간 : 1972.2. - 1972.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

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10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2. 2.

서울특별시장

“ 인가조건 ”

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들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계약 설계도서 (평면도) 에 의하여 시공설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시제 25호

1972년도 정기 종축검사 실시

1972년도 정기 종축검사들 축산법 제 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실시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방법

종축검사를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관할구청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원이 순회출장 검사합니다.

3. 실시기간

72.4.1. - 4.30 (30일간)

4. 검사대상

한우, 돼지

5. 검사장소

가축사육장소 또는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

6. 기타 · 자세한 것은 관할구청 산업과 (농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2. 2.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고시제 26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 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동산 130-1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조합

시행면적

6,400 평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조합

조합장 황 환 성

4.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 : 1972. 2

준공 : 1972. 5.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7. 인가내용

별첨 인가증 및 도면표시와 같음. 끝.

인 가 증

1. 사업집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동 산 130-1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면적 : 6,400 평

3. 사업자의 주소·성명 : 서울 고등검찰청 직원주택조합장 황 환 성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제 26 호

5. 사업기간

착공 :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 : 1972. 5.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생략)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2. 2. 22.

서울특별시
(별첨 인가조건)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은 사업신청서와 설계도에 의거 시행하되 본 인가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절차나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지주(9cm×9cm 각목)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건설업 면허소지자라야 시공할 수 있다(공사 시공감독자의 토목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사진,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을 착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토지개발사업법 제 55조의 이행과 지적법 제 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인증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공사집행에 있어 토사유출, 낙반 등으로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착공전에 미리 대책을 하여야 하며 이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월상 복구하여야 한다(보상 또는 월상복구비 신청은 당시가 결정한다).
6. 본 공사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7. 본 지역의 입목 벌채 및 발파에 대하여는 별도 허가를 득한후 착공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이를 필하여야 한다.
8. 공사 진척사항을 매주 1회 감독관에 매월 1회씩 구청장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본 사업 인가지구 상단 입야와 접하는 산비탈 계곡 부분에 30㎡ 이상의 침사지를 설치할 것.
10. 단지내 하수관을 기설하수관에 연결하는 유입하수 관경은 D=100, 구배는 0.8%로 하고 지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m - 30m 간격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의 낙차가 크므로 맨홀에는 반드시 부관을 설치할 것.
11. 소로 3-2 노선중 맨홀(1)번과 (2)번 사이 관경은 D=90, 구배는 1.0%로 매설하고 기타 하수시설은 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하수시설물은 서울시 규격품을 사용할 것.
12. 택지조성에 있어서는 석축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를 초과할 시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구조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낮은 석축 높이로 시공할 것.
13. 포장공사는 서울시 포장공사 지방서 및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상수도 시설은 지하수 개발로 자가

급수계획에 의거 취수정, 여과지, 배수지 설치장소 및 배관 매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급수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별도 가압 시설 인가를 받아 수탁공사로 시행하도록 할것.

15. 공사 완료후의 지구내의 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 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 귀속시켜야 한다.

16. 본 사업을 완수키 위하여 귀하가 공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바 본 예치금은 본 인가조건 및 행정지시에 위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비 및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행정대집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17. 본 인가조건과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행정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18. 시흥동 산 130-2 번지들 통과하는 진입도로는 본 사업실시 인가에서 제외하며 소 3-1호 노선은 산비탈면까지 연장 시공할 것.

19. 이상 인가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필요한 경우 본 인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로 지시할 수 있다.

첨부.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28호

도시계획 학교 시설결정

1. 도시계획 학교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동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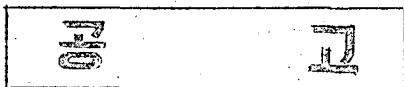
3. 학교 시설조서

구 분	위 치	시 설 면 적	비 고
학 교	성북구 창동 산 205 의 5 의 4 필지	13,457 m ²	학교시설 용지

별첨 도면참조

1972. 3. 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1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효력회복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회복을 하천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학동 7-19 번지 앞 하천

2. 허가규모

암거 D=1m, L=150m 2련
유공관 147m, 무공관 3m
징수정 3m X 3m, 각형높이 6m

돌출임 및 돌망태설치 길이 = 200m

3. 허가목적

도수관설치 (공장에 소요되는 급수)

4. 허가기간

71. 5. 8 - 72. 2. 28

5. 주소·성명 (허가받은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학동 7번지
서울미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유

◎서울특별시 공고제 2 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
천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2 가 1 - 안암
동 4 가 41-37 번지 사이 하천 (성북경찰
서 뒤 - 대광국민학교 뒤)

2. 허가규모

길이 = 1,444 m, 폭 = 22-26 m

3. 허가목적

하천복개후 유도회관 및 상가아파트
건립

4. 실효일자

71. 11. 1.

5. 허가받은 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1번지
재단법인 한국유도원
이사장 장 경 순

6. 실효사유

기한내 공사 미착수

◎서울특별시 공고제 4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 허가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허가
하였기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관
할 구청과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성
북구 미아동 745-32 심재길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6.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산 112의 1 외
4 필지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 송천주택단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745-32
심재길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 1972. 1.

준공 : 1972. 5. 30.

5. 사업계획 내용

별첨 도서 (생략)

6. 조 건

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제정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 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나.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시송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8 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 개 이상의 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 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승복하여야 한다.

바. 이 허가로 사업 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 (생략). 끝.

◎서울특별시 공고제 6 호

도시계획 공원 변경 (폐지)

당시 관내 경동공원이 건설부고시 제 701호 (71.12.17)로 변경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1. 1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첨부. 건설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제 7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당시 중구회현동 1가산 1의 2에서 중구 장충동 2가 사이의 남산 순환도로 북측면 지역을 건설부고시 제 702호 (71.12.17)로 미관지구로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1. 1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첨부. 건설부고시 제 720호 사본 1부.

※건설부고시 제 720 호

서울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1.12.17

건설부장관

1.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미관지구	중구회현동 1가산 1-2 에서 장충동 2가 산 14-33 사이의 남산 순환도로 북측면	700,000㎡	연장 3500 m 폭 : 도로북단 경계에서 북측으로 200 m 내외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끝.	

◎서울특별시 공고제 8 호

도시계획 공원 일부 변경

당시 관내 상도 공원이 건설부 고시 제 715 호 (71.12.22) 로 변경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1. 1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첨부. 건설부 고시문 사본 1 부, 끝.

※건설부고시 제 715 호

서울 도시계획 공원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1.12.22

건설부장관

1. 공원변경 결정조서

번호	공원명	위치	기정면적	변경면적	변경후면적	비고
내 13	상도공원	상도동·동작동 ·후석동	1,237,331㎡	8,713㎡	1,228,618㎡	풍치지구로 변경

별첨: 도면포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16 호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1.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함.

2.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 과 또는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림.

1972. 1. 18.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건부·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조합장 황환성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2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동산 130-1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고시제 17 호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조합
 조합장 황 환 성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1972. 1. . .
 준공 1972. . . .

5. 사업계획 내용
 별첨도서(생략)

6. 조 건

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제정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 제
 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시송달은 도시계획법 제 28 조 규
 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
 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
 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
 법령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승복하여야 한다.

바. 본 허가로 사업 시행할 수 없으
 며 별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받아
 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생략). 글.

©서울특별시 고시제 18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허가
 하였기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 서대문 구청과 사업시행자인
 태진건설주식회사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25.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산33의3 외
 10필지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면적

30,439 m² (9,207.8 평)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동50-2
 태진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학동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1972. 1. . .
 준공 1972. 12. 30.

5. 사업계획 내용

별첨도서(생략)

6. 조 건

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제정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시 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에 의한 법령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승복하여야 한다.

바. 본 하가로 사업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생략). 글.

◎서울특별시 고시제 19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1. 주소 또는 거소성명

서울특별시종로구예지동 113 유영상의 22명

2. 구 분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 72년 수시문
가. 납부기간

72.1.8 - 72.2.7.

나. 납입장소

상업은행 시금고과 또는 당시 도시계획국 서문과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72.1.5.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불능하여 납입기일을 72.2.10.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도봉지구 (1차) 공시송달 대상자 조서

수납번호	물 건 지	청 산 금	소 유 자	
			주 소	성 명
81	도봉동 449-1	2,116	예지동 113	유 영 상
49	방학동 204-1	791	하월곡동 68-2	이 세 우
96	도봉동 145-2	140,609	계기동 13	이 귀 학
26	방학동 233-1 외 1	3,248	도림동 144	유 기 현
29	" 233-2, 3	848	"	"
42	" 232-1	1,124	신당동 산 9-49	유 상 열
7	쌍문동 36-1	48,554	수유동 10-13	임 근 호
21	방학동 285-4	104,299	성북동 15-1	전 형 필
6	쌍문동 2-5	995	"	"
28	방학동 50-3	39,913	효창동 5-393	이 기 석
"	" 산 50-3	68,817	"	"

수납번호	물 건 지	청 산 금	소 유 자	
			주 소	성 명
62	방학동 152-2	29,747	신당동 304-448	신 연 욱
15	쌍문동 31-6	20,231	쌍문동 31-6	김 원 철
50	방학동 288-2	1,004	" 216	한 태 식
"	" 289-2	1,004	"	"
56	" 209-3	22,935	방학동 388	김 갑 순
75	" 118-2	867	도봉동 423	남 궁 전
77	" 122-2	9,813	방학동 122-2	권 사 봉
79	도봉동 120	913	도봉동 771	안 창 권
83	" 138-8 외 5	1,321	" 451	진 창 님
93	" 146-3	47,179	" 146-3	이 회 선
101	" 162-2	2,978	" 169	배 영 규
3	방학동 54-9	146,711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87	황 영 희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
 천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25.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 3가 1번지 -
 5가 118번지 앞

2. 허가규모

길 이 : 643 m
 폭 : 20 m
 높 이 : 2.8m

3. 허가목적

하천복개후 상가아파트 건립

4. 실효일자

72. 1. 1.

5. 허가받은 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 3가 11번지

성북상가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승구

6. 실효사유

준공기한내 공사 미준공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 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
 천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2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 1-3 앞 구거

2. 허가규모

폭 : 3 m
 면적 : 334.75 m² (101.40 평)

3. 허가목적

복개후 통로사용

4. 실효일자

71. 11. 21

5. 허가받은 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 16-3
 삼청동번영회 대표 김관우, 송영봉

6. 실패사유
 기한내 공사 미준공. 글.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
 화양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공람 공고

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 (건설부
 공고 제 117 호 ; 71.12.28) 을 받은 화
 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가지구 사
 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 정
 리 제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사업에
 유익한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람.
3. 이 공람·공고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
 겠으나 송달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통지에 가름
 함.

사 업 개 요

1. 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화양 추가 토
 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서울특별시성동구 구의동, 자양동 각
 일부
3. 시행면적
 1,522,610 m² (450,588 평)
4. 시행기간

1972 (인가일) - 1975.12.31.

1972. 1. 28.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 변경허가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변경허가를 도시계획
 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
 여 공고함.

1972. 2. 3.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성동구명일동산 4 번지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 칭 :
 명일동 주택단지 조성
 면 적 : 4,080 평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당초 (양도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50
 제일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서 구
 변경 (양수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50
 중앙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서 구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 : 1971. 12. 31.
 준공 : 1972. 3. 31.
5. 조 건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 호 (71.12.30)
 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에

부한 인가조건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시제 27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허가

- 1.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건부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2. 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갈현동산 123 의 1 의 4 필지
-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 갈현주택단지
면적 : 34,550 m²
-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갈현동 6 의 6
청현택
서울특별시서대문구래현동 110 의 27
이화송
-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 1972. 2.
준공 : 1972. 10.31.
- 5. 사업계획 내용
별첨도서 (생략)
- 6. 조 건

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제정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나.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시송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8 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 법령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승복하여야 한다.

바. 이 허가로는 사업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31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도봉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72. 1. 6.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납입기일을 72.2.29.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2.

서울특별시 양 택 식	지서 72 년 수시분
1. 주소 또는 지소·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교동 25 폴타코 화학의 16명	가. 납부기간 72.1.27 - 72. 2.29.
2. 구 분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	나. 납입장소 상업은행 시금고과 또는 당시 도 시계획국 서무과

도봉지구 청산금 (2차) 고지서 등시승달 조서

수납번호	물 건 지	금 액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25	도봉동 178-18	15,180	무교동 25	폴타코화학Co.	
148	" 170, 171-2	404,636	청파동 1가 131	박 금 선	
157	" 산 98-8	49,922	통의동 7-29	유 치 봉	
151	" 168-7	59,275	파주군주내면연풍리 327	김 양 천	
172	창 동 200-1	329,784	동소문동 7가 22	김 정 희	
162	도봉동 186-2	7,720	미아동 564-11	정 금 광	
164	" 185-4,8	236,645	" 164	박 신 규	
169	창 동 212-1	13,374	" 526	김 춘 산	
168	" 201-1	353,663	광희동 2가 205-1	오 정 차	
180	방학동 47-1,2	448,260	미아동 533-54	김 기 환	
186	" 110	22,849	방학동 110	김명진의 1인	
111	도봉동 163-13	123,328	도봉동 163-10	김 영 차	
137	" 171-1	376,689	" 171-1	장 갑 예	
116	" 163-9,61	277,471	" 163-9	최 만 희	
172	창 동 197-9	210,751	창 동 197-9	임 학 수	
165	도봉동 185-13	254,412	도봉동 427-10	김 원 결	
105	" 159-1 의 11필	295,071	" 163-6	최 병 욱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 호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추가
사업인가 신청기간의 지정공고

1.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추가사업
시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인가 신청
기간의 지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2 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다 음

사업목적	사업명	시행지구	시행면적	인가신청기간	비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 추가사업	성동구 명일동·상일동 고덕동·성내동 각일부	200,000(평)	72.2.15-4.15 (공고 일로부터 2개월간)	

1972. 2. 15.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 회복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회복을 하
천법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72. 2. 17.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영등포구상도동 29-170 번지선

2. 허가규모

복개공사

길이 = 225 m, 폭 = 5.5 m, 높이 = 4 m

3. 허가목적

통로확보후 잔여 폐천부지 양여

4. 착수기간

72. 3. 10.

5. 준공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

6. 허가받은 자의 주소·성명

영등포구상도동 174-4

권선옥 외 1인.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 호

수도공채 원리금상환 공고
서울특별시 제 2 회 상수도확장사업 지
방채 조례 제 8 조에 의하여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함을 고시함.

1. 상환공채명

서울특별시 제 2 회 상수도확장사업
공채

2. 상환일자 및 대상

① 상환개시일

1972. 3. 2.

② 매출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난
공채

매 출 상 환

예시 (71.3.10 → 72.3.10 이후)
71.5.20 → 72.5.20 "

3. 상환금 지급업무 취급기관

한국상업은행 본점 증권부

" 시금고 업무부 (시본청구내)

4. 참 고

① 공채상환금 청구시는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함.

② 제 1 회 상수도 확장사업 공채는
72.11.6 이후에 원리금을 일시 상
환함.

1972. 2. 24.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 호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지적 결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지적 결정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설부 고시제 46 호 ; 72.2.11) 이를 고시

합.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2. 1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첨부. 건설부 고시제 46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46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공고

1.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 실시계획을 (건설부 공고제 9호, 1972.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4조 및 동법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변경 개요

가. 사업명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내동·망우

동·상봉동·면목동·중화동·목동·공릉동 각일부

다. 시행면적

당초 : 6,514,418.40 (1,970,602.70평)

변경 : 6,452,821.43 (1,951,969.70평)

1972. 3. 2.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제 47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관내 궁정동-정능간 및 영동지구 주요 간선 가로변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 739호 (71.12.30)로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 3. 2.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별첨 조서참조)

1.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종결	위치	면적	비고
1	2종	신사동 - 포이동	90,480 m ²	광로 21호선변 연장 : 3,770 m 폭 : 양측 각 12 m
2	"	신사동 - 영동교	76,320	광로 14호선변 연장 : 3,180 m 폭 : 양측 각 12 m
3	"	영동교 - 대치동	61,920	광로 13호선변 연장 : 2,580 m 폭 : 양측 각 12 m

구 분	종 결	위 치	면 적	비 고
4	2 종	서초동-성동구이동	27,600 m ²	광로 20 호 선변 연장 : 11,500 m 폭 : 양측 각 12m
5	"	반포동-삼성동	92,160	대로 1 류 21 호 선변 연장 : 3,840 m 폭 : 양측 각 12m
6	"	압구정동-개포동	125,760	광로 18 호 선변 연장 : 5,240 m 폭 : 양측 각 12m
7	3 종	신사동-신원동	240,000	광로 17 호 선 (경부고속도로) 변 연장 : 10,000 m 폭 : 양측 각 12m
8	"	방배동-성동구일동	1,104,000	광로 19 호 선 변 (제 3 순환도로) 연장 : 46,000 m 폭 : 양측 각 12m
9	"	궁정동-정능입구	1,222,000	중로 2 류 56 호 선변 대로 3 류 58 호 선변 연장 : 24,000 m 폭 : 양측 최소 12m 최대 200m
계		9 개 소	3,040,240	

2. 공지지구 결정조서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1	2 종 공지지구	평창동 (북악터널 서측)	646,000 m ²	
2	"	" (북악터널 동측)	322,00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건설부 고시제 739 호

서울도시계획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1. 12. 30.
건설부장관
(별첨조서 참조)

1. 미관지구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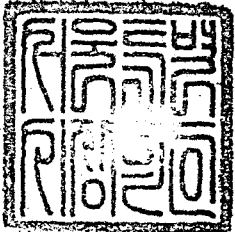
구 분	종 결	위 치	면 적	비 고
1	2 층	신사동 - 포이동	90,480 m ²	광로 21 호선변 연장 : 3,770m 폭 : 양측 각 12m
2	"	신사동 - 영동교	76,320	광로 14 호선변 연장 : 3,180m 폭 : 양측 각 12m
3	"	영동교 - 대치동	61,920	광로 13 호선변 연장 : 2,580m 폭 : 양측 각 12m
4	"	서초동 - 성동구의동	27,600	광로 20 호선변 연장 : 11,500m 폭 : 양측 각 12m
5	"	반포동 - 삼성동	92,160	대로 1 류 21 호선변 연장 : 3,840m 폭 : 양측 각 12m
6	"	압구정동 - 개포동	125,760	광로 18 호선변 연장 : 5,240m 폭 : 양측 각 12m
7	3 층	신사동 - 신원동	240,000	광로 17 호선 (경부고속도로) 변 연장 : 10,000m 폭 : 양측 각 12m
8	"	방배동 - 성동구일동	1,104,000	광로 19 호선변 (계 3 순환도로) 연장 : 46,000m 폭 : 양측 각 12m
9	"	금정동 - 청능입구	1,222,000	중로 2 류 56 호선변 대로 3 류 58 호선변 연장 : 24,000m 폭 : 양측 최소 12m 최대 200m
계		9 개 소	3,010,240	

2. 공지지구 결정조서				
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고
1	2종공지지구	평창동 (북악터널서측)	646,000 ㎡	
2	"	" (북악터널동측)	322,000	

이상 결정조서는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공고제 48 호
서울특별시시장의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직 인 명 : 서울특별시시장의 인
2. 개 각 년 월 일 : 72. 3. 1 10:00
3. 인 영 : 별 첨
1972. 3. 1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인 영
서울특별시시장의 인



◎서울특별시공고제 51 호
직 인 개 각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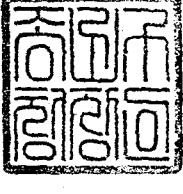
1. 종로구청장 및 동대문구청장의 직
인을 다음 인영과 같이. 개 각 하였

기 공고함.

가. 인 형 명
1) 종로구청장의 직인
2) 동대문구청장의 직인



나. 개 각 년 월 일 : 72. 3. 1
다. 인 형 : 별 첨
1972. 3.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인명 종로구청장직인

(구) (신)

인명 종로구청장 (호적, 병사용) 직인

(구) (신)

동 대 문 구 청 장 직 인

개 각 된 구 청 장 직 인 인 영

일 반 문 서 용

호 적 병 사 용

